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공 고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8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고할 사항-

1. 화해허가신청 고지서(덧붙임)

2020. 12. 21.

재판장 판사 김 환 수

화해허가신청 고지서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731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 김태웅 외 14
피 고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대표이사 허창수, 임병용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731호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관하여 원고(대표당사자)들과 피고로부터 재판상 화해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구성원은 서면으로 화해허가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1. 총원의 범위

총원은, 피고가 제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 3. 29. 17:15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 4. 10. 17:33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 4. 10. 17:3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총원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지급방법(화해의 내용)

가. 화해금

피고가 총원에게 지급할 화해금의 금액은 12,000,000,000원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기일 및 지연손해금

화해금은 피고가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화해허가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만일 이 기일을 초과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익일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위 화해금은 피고가 직접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여 보관시킨다.

다. 원고 주장의 손해액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총원이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유통시장에서 피고 지에스건설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산정된 총원 10,251인에 대한 손해액 합계금액은 43,777,824,170원이다.

라. 화해금의 산정

피고가 총원에게 지급할 화해금은 위 손해액 합계금액 43,777,824,170원의 약 27.4%에 해당하는 12,000,000,000원이다.

3. 분배의 기준 및 방법 등

각 구성원에 대한 분배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권리신고기간내에 권리신고를 행한 구성원 전원의 손해액에서 권리신고를 한 각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분배계획안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면책

가. 원고(대표당사자)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나아가 총원에 포함된 각 구성원은 피고 및 관련자들(이하 “피고측”)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향후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며, 피고측을 행정·사법 기관 등에 수사·조사 의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총원의 각 구성원은,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책사유 또는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집단소송의 계류로 인하여, 해외수주 및 해외자금 조달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영업 비밀 노출의 우려가 있고, 기타 금융업 등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업운영에 애로가 있어 화해를 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분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화해를 하게 되었다.

5. 소송비용

원고(대표당사자)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소송허가신청사건의 소송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6. 변호사 보수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등 중 1심에서 성공 시 20%(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 2심에서 성공 시 25%, 3심에서 성공 시 30%로 약정되었으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다.

7. 화해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

2021. 2. 17. 10:3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 법정

8.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연락처 및 문의 방법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박필서, 구현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서초동,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전화번호 : 02-537-9500, 팩스:02-564-9889)

2020. 12. 21.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환수